

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증개정 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0. 12. 4.
- 나. 회부일자 : 2000. 12. 11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제7차 사회도시위원회(2000. 12. 29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자 : 건설과장 전 승 주)

가. 개정이유

-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지침에 의거 주민의 권리,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 규칙중 법령 미근거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토록 함에 따라 현행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상에 있는 기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규정이 불합리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소하천정비법 제18조(공익을 위한 처분)에 의거 부득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기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시는 그에 따른 이자까지도 반환토록 함. (안 제7조③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 화 순)

-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주민의 권리·의무를 규정하는 근거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본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(점용료 등의 징수) 및 동법시행령 제15조(소하천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)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, 토석,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부과·징수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임.
- 개정할 내용으로는
소하천정비법 제18조(공익을 위한 처분)에 의거 부득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때 이자없이 반환하던 규정을 이자까지도 반환한다는 사항임

동법에는 이자 반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와 유사한 사항인 “과오납금 반환 및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이자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하천법 제59조(과오납금의 반환)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(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)의 규정을 살펴보면, “관리청은 과오납된

부담금·점용료·사용료 및 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과오납 날의 다음날 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%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”고 되어 있으므로,

본 개정조례안은 과오납금 및 그에 따른 이자의 반환과 관련되어 있으므로, 제7조(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) 제3항에 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%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”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하천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주민편익 도모와 행정의 신뢰성을 위한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8. 기타사항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0년 11월 일

제 출 자 : 광주광역시서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지침에 의거 주민의 권리,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 규칙 중 법령 미근거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토록 함에 따라 현행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상에 있는 기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규정이 불합리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소하천정비법 제18조(공익을 위한 처분)에 의거 부득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, 기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, 앞으로는 기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시는 그에 따른 이자까지도 반환토록 함.(안 제7조③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하천법 제59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41조
- 나. 도로법 제78조의 2 및 시행령제36조의 3
- 다. 제3차 [규제 개혁 위원회]심사결과 통보 : 가감 11250-10820(2000.7.22)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%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